

**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건설복지위원회 심 사 보 고 서

2015년 12월 15일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건 설 복 지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5년 11월 17일 , 종로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18일 원안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25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

제2차 건설복지위원회(2015.12. 3.) 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유철호 도시관리국장)

가. 상정 이유

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옥외광고정비
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·관리하고자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
항 등 우리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
고자 함.

나. 주요 내용

1)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) 설치 및 구성 명시

- 2) 위원회 운영내용 신설
- 3) 위원회 위원 제척·기피·회피 등 신설
- 4)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신설
- 5) 회계공무원 신설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"생략"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(생략)

5. 토 론 요 지 : 이재광 위원외의 수정 동의안

6. 수정안의 요지 (별첨)

7. 심 사 결 과 : 수정 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함)

별첨

수정 동의안

개정안	수정안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⑤ 구청장은 기금운 용계획의 <u>주요항목지출금액</u> 의 10분의 2를 초과하 는 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 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	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⑤ ----- <u>정책사업 지출금액</u> ----- ----- -----.

3. 질의 및 답변 요지 (생 략)

4. 토 론 요 지 (없 음)

5. 수정안의 요지 (없 음)

6. 심 사 결 과 : 의견 없음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